

■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[별표 32의3] <신설 2022. 10. 26.>

화물자동차의 적재량 표시 방법(제19조제2항 관련)

1. 화물자동차의 뒷면에는 차량총중량 및 최대적재량을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알아보기 쉽게 표시해야 한다.

가. 표시는 배경과 글자를 포함하거나 글자로 할 것

나. 크기 및 문자배열은 다음에서 정한 바를 따를 것

- 1) 두 줄로 표시하는 경우 표지크기는 가로 300밀리미터 이상, 세로 100밀리미터 이상이며 글자크기(높이)는 30밀리미터 이상일 것
- 2) 한 줄로 각각 표시하는 경우 표지크기는 가로 300밀리미터 이상, 세로 40밀리미터 이상이며 글자크기(높이)는 30밀리미터 이상일 것

다. 표시 내용의 배경색과 글자는 선명하게 대비될 것

라. 표시의 형식(예시)

- 1) 두 줄로 표시하는 경우

100mm 이상	차 량 총 중 량	4 0 , 0 0 0 k g
	최 대 적 재 량	2 0 , 0 0 0 k g
	300mm 이상	

- 2) 한 줄로 각각 표시하는 경우

40mm 이상	차 량 총 중 량	4 0 , 0 0 0 k g
	300mm 이상	
40mm 이상	최 대 적 재 량	2 0 , 0 0 0 k g
	300mm 이상	

2. 차량총중량 및 최대적재량의 표시는 쉽게 변색되거나 지워지지 않아야 한다.

3. 차량구조상 제1호의 표시방법을 차량 뒷면에 적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다.

가. 차량 우측면 뒤쪽에 차량총중량 및 최대적재량을 표시[제1호라목1)의 예시]

나. 차량 좌측면 뒤쪽에 최대적재량을 표시하고, 우측면 뒤쪽에 차량총중량을 표시
[제1호라목2)의 예시]